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야외공연장 및 소공연장에 한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 허가여부 등을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1.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최근 이용 실적이 많은 자 또는 단체 순으로 한다.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연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과 내용,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2. 공연장내에 공연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연장 내에 홍보물을 걸어 붙이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5. 공연장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용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최종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신청 한 경우
3. 기타 소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이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소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소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2:00~18: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1회 사용으로 본다.

③ 공연 등의 행사준비 및 장비설치·반출 등은 사용 허가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단, 야외 공연장 등 시설 이용 활성화 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연장 시설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행사로 인하여 공연장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입장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 부 칙 -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6.03.01.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조례」 개정되어 시행하면 자동 폐지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연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연락처	C.P.
	성명(단체대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목 적						
참 가 대 상 및 인 원						
특 별 초 청 및 참 석 자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지침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팩스번호 : 062-613-6479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귀하						